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6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5.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5.3.
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5.14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6.1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조만호】

가. 제안이유

-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,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 및 생명·신체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 -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
 - 구민안전보험, 보험기관, 재난, 구민에 대한 용어 정의

- 가입대상(안 제3조)
 - 가입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규정
-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(안 제4조~안 제5조)
 - 예산범위 내 보험의 종류, 보상범위,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
 -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
- 구민안전보험 운영(안 제6조~안 제9조)
 -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에 따른 조사협조에 관한 사항
 - 보상금액은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에 따른다는 규정
 - 보험금 청구 대상자 및 구비서류 관련 사항
 -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
- 보상제외(안 제10조) :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
- 시행규칙(안 제11조) :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,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 및 생명·신체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<조례 제정 배경>

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에 마포구에서 발생한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한 구민은 13명에 이르며, 부상자는 1,715명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※ 마포구 관내 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(2018년말 기준)

[단위 : 명]

계		화재		교통사고		강도 등		스쿨존 사고	
사망	부상	사망	부상	사망	부상	사망	부상	사망	부상
13	1,715	2	4	11	1,703	-	6	-	2

-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로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.
-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, 7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, 후유장해,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1,500만원 규모의 구민안전보험을 직접 가입해 주고 있으며, 이와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에 맞춰 마포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.

※ 안전보험 조례 제정 및 가입 현황(2018년 말 기준)

[단위 : 명]

조례제정	입법예고	안전보험 가입현황			
		계	서울	조례 입법 예고	광역시, 기초
99	18	74	서대문, 성동, 동대문, 강동	마포, 은평, 송파	70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.
-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보험의 가입대상,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.

-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, 보험금 산정, 보험금 청구, 보험금 지급 등을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10조에서는 보상 제외 사항을 명시함.

○ <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>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강원도 고성산불, 포항지진, 각종 교통사고, 조현병 증가로 인한 묻지마 폭행 등 각종 재난은 우리 주변에서 예고 없이 찾아와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구민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함.

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과 별도로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구민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해 줄 수 있어 주민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.

다만, 보험회사와 계약 시 최근 조현병 증가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범죄상해특약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,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 등을 검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받을 수 있는 보험보장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